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9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이종배
김석기 · 김성원 · 김기현
윤상현 · 정점식 · 김기웅
성일종 · 김 건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,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. 또한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함으로써 치매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4 신설).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4를 제12조의5로 하고,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4(실종 예방을 위한 기기 지원 및 안전확인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치확인 기능을 갖춘 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거주하거나 실종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전화, 방문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안전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매환자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실종 예방 및 안전 확인 목적의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취득하여야 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취득 또는 관리

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실종 예방 및 안전 확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제1항에 따른 기기 지원의 기준·절차, 제2항에 따른 안전 확인의 방법, 제3항에 따른 동의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4(실종 예방을 위한 기 기 지원 및 안전확인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 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를 예 방하기 위하여 위치확인 기능 을 갖춘 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 로 거주하거나 실종 위험이 높 은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대상 으로 전화, 방문 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 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 조기기 지원 및 안전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매환자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.</u> <u>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</u>

<u>제12조의4</u>(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) (생 략)	<u>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실종 예방 및 안전 확인 목적의 범 위에서 최소한으로 취득하여야 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<u>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 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취득 또 는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실종 예방 및 안전 확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⑥ 제1항에 따른 기기 지원의 기준·절차, 제2항에 따른 안전 확인 방법, 제3항에 따른 동 의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 <u>제12조의5</u>(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) (현행 제12조의4와 같음)
--	--